

붙임1. 상황별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

1. 유의사항

- 모든 서류는 **열람용이 아닌** 출력본으로, **보안해제, 압축 해제** 후 첨부 바랍니다.
- 모든 서류는 신청자 **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번호** 전체 표시 바랍니다.
- 다음 서류는 **1개월 내 발급분**으로 첨부 바랍니다.
 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- 사업자등록증명, 재직증명서, 근무확인서
- **배우자가 있을 경우**, 배우자의 (1)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(2)소득금액증명(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), (3)'추가 근로증명서류'(선택) 및 '추가 소득증명서류'(선택), (4)'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' 촬영 사진을 첨부 바랍니다.
- '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'은 국세청 홈택스>MY홈택스에서 '연말정산/장려금/학자금'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(캡처가 아닌 **휴대전화 촬영본**으로, 좌측 상단에 **본인 성명 및 제출내역 전체**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 바랍니다.)
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)은 5월 이후,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종합소득세 신고자용)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은 7월 이후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신청서류미흡으로 인한 심사부결 후 재심사 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은행 대출심사 시에도 연소득 자격심사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. 대출 시 자격조건에서 벗어난 소득이 파악될 경우에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2. 근로증명서류

필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→ '주민등록번호 표시' 후 조회조건(가입자구분)을 '전체'로 하여 발급 바랍니다.
근로 청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, → 사업자등록증명 / 재직증명서, 근무확인서 등을 첨부 바랍니다. →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첨부 바랍니다.
추가 서류 취업 준비 생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가입일 합산이 1년(365일)미만인 경우, → 경력증명서, 근로계약서, 프리랜서계약서, 위촉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기간을 추가 증명 바랍니다. → 계약기간만 있고 실제 근로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서류는 계약기간 중 급여지급내역* 추가 증명을 통해 근로기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. *급여명세서, 임금대장, 원천징수확인서(원천징수부), 근로계약서 상 사업자 또는 대표자를 임금주 로 한 통장거래내역서(은행 직인 필수))

3. 소득증명서류

근로청년	근로소득	필수	<p>연소득금액 = (근무기간 내 소득합산액/근무개월수) × 12개월'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전년도 '(근로소득자용)소득금액증명'(또는 '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') *국세청 홈택스 발급 → 전년도 서류 발급불가 시 전전년도 발급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
		추가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에 현재 직장소득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, 다음 서류 중 하나를 택하여 추가 제출 바랍니다.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최근 1년간의 '급여명세서 등' (*최소 1개월의 근무사실이 있어야 함) -급여명세서, 임금대장, 근로소득원천징수부,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 중 선택 (비과세 급여 항목 모두 표시) -급여명세서 상 공제 및 세금내역이 '0원'일 경우, 근로계약서 상 사업자 또는 대표자를 임금주로 한 통장거래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-확인자 직인(또는 서명) 포함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소득금액증명 상 현재 직장의 소득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, → 이직을 하였을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상에 이직 전 직장의 소득이 이직 후 직장의 소득에 합산되어 소득금액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현재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바랍니다.
	사업소득, 기타소득	필수	<p>연소득금액 =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전년도 '(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)소득금액증명'(또는 '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') *국세청 홈택스 발급 → 전년도 서류 발급불가 시,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전년도 '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(세무사 확인분)' 또는 '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'(연말정산용만 인정)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 → 전년도 서류 발급불가 시 전전년도 '소득금액증명'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
		추가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수소득서류에 현재 사업/기타소득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, → 업종의 유사성이 있는 여러 근로계약 건은 연속성이 인정되어 연속된 계약기간의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원에 표시될 경우, 증명원상 금액이 연소득금액입니다. (근로계약서 등 추가 근로 증명서류 제출 필수) → '(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)소득금액증명원'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, 국세청 홈택스에 해당 연도 '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'이 없고 최종 재직 직장의 퇴직증명*을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연소득금액을 '0원'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. (*최종적으로 재직했던 직장의 직인이 찍힌 퇴직/경력증명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원)
기타		신청일 현재 같은 종류 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소득이 2건 이상인 경우에 합산하여 심사합니다.	
취업준비생 등	필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전년도 '소득금액증명'(또는 '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') *국세청 홈택스 발급 → 전년도 서류 발급불가 시 전전년도 발급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 	
	본인 소득 없음 증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'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'을 발급할 수 없거나, 발급했음에도 '사실증명'의 해당연도 이후 근로 사실이 있는 경우, →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제출하시면 '현재 소득없음'으로 심사됩니다.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최종 재직 직장의 직인이 찍힌 퇴직/경력증명서 ② 폐업사실증명원 ③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(최종 재직 직장의 가입이력이 있고, 최종 재직 직장의 근로기간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) </div>	
	부모 소득 증명	<p>연소득금액 =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부모님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'소득금액증명' (또는 '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') 첨부 바랍니다. ● 소득금액증명원 귀속연도의 부모 합산소득은 7천만원을 초과하나 귀속연도 이후 퇴직 및 폐업을 하여 부모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, → 해당 부모님의 (1)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(2) 퇴직/경력증명서 또는 폐업증명원을 추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. 	